예 산 총 칙

2013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00,325,705	9,009,771
일반회계	232,795,083	6,983,852
특별회계	67,530,622	2,025,919
공기업특별회계	7,703,196	231,096
의령친환경골프장지방직영기업공기업특별회계	7,703,196	231,096
기타특별회계	59,827,426	1,794,823
상수도사업특별회계	6,517,994	195,54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83,293	17,499
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057,229	31,717
농업인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22,344,642	670,339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7,448,445	223,453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9,202,000	276,060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2,200,546	66,016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10,042,347	301,270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	408,467	12,254
기반시설특별회계	22,463	674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780,928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6,3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